

청소년시설환경 투고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2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3차 개정 : 2008년 2월15일

·4차 개정 : 2008년 9월20일

·5차 개정 : 2009년 11월13일

·6차 개정 : 2011년 3월 31일

·7차 개정 : 2014년 3월 01일

1. 투고 자격

- 1) 우리학회 논문집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하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는 모두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 2) 논문저자는 동일저자일 경우 동일호에 2편 까지 게재 할 수 있다.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2. 투고 대상

- 1)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환경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설계작품, 기타 자료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 2)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은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과 설계작품을 원칙으로 하며 본 논문집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 2007.02.20)
- 3) ‘게재보류’로 최종판정된 논문과 설계작품은 ‘게재보류’ 판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게재보류’ 판정에 대한 심사의견과 지적사항별 조치내용이 재투고 논문 및 설계작품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 2009.11.13)

3. 투고자의 경비부담

- 1) 논문의 심사료는 100,000원이며 기본 게재료는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게재료는 300,000원이다. 다음호로 심사가 이관되어 재심을 받는 경우 심사료는 70,000원이다. 단, 12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쪽당 2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 2) 원고의 편집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투고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편집비용(페이지당 5,000원)을 지불하고 출판사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 2008.02.15)
- 3) 별쇄본 10부의 제작비는 20,000원이며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 2007.02.20.) (개정 : 2014.03.01)
-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 5) 원고마감 후에 접수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급행심사료를 지불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 2008.02.15)

4. 원고 제출

- 1) 본 논문집은 연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하고,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 되, 원고 마감은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로 한다. (신설 : 2007.2.20) (개정 : 2008.9.20)
- 2) 원고는 전자우편(youth924@hanmail.net)으로 제출한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7.2.20)
- 3)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

- 1) 원고의 논문제목,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위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신설 : 2007.2.20)
- 2)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 3) 논문에는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영문초록은 논문의 전면에 위치하며 분량은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 초록 다음에 5개 이내의 주요어(key word)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개정 : 2011.3.31)
- 4)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논문집 12쪽 이하로 한다. (개정 : 2005.10.08) (개정 : 2007.02.20.) (개정 : 2014.03.01)
- 5) 논문과 설계작품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청소년시설환경 심사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2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3차 개정 : 2008년 9월20일

·4차 개정 : 2009년 11월13일

·5차 개정 : 2014년 3월 1일

1. 목적과 적용대상

- 1) 이 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논문집에 게재된 작품은 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동등한 연구실적물로 간주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등

-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및 작품 1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 2009.11.13)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소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과 작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에 다수의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추천한 다수의 심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다수결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5) 편집위원회에서는 1편 당 제 1·2·3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심사결과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 2008.9.20)

3.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 1) 심사위원은 회원과 비회원이 포함된다.
- 2)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공, 강의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지명도, 재직기관, 출신학교, 활동지역, 심사의 성실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방법

- 1)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 2) 논문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품내용은 설계작품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최종평가가 ‘수정 후 재심’일 경우 2차 심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는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중 하나로 평가한다. 단, 2차에서 ‘수정 후 재심’이 나온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사를 실시한다.
최종평가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에도 답변서를 받아 심사위원에게 수정 부분을 확인 받도록 한다. (개정 : 2007.2.20.) (개정 : 2014.03.01.)

5. 게재여부 판정

- 1)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 또는 설계작품은 '수정 후 게재가' 또는 '게재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9.11.13)
- 2) 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동일 평가일 경우 이를 최종판정으로 한다.
(신설 : 2007.2.20) (개정 : 2009.11.13)
- 3) 최종판정이 '수정 후 게재가' 또는 '게재가'일 경우 논문 또는 설계작품은 투고일부터 1년 이내에 게재되어야 한다. (신설 : 2009.11.13)
- 4)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게재가'와 '게재불가'가 각기 1인일 경우 제 3 심사위원에 의해 최종결과를 결정한다. (신설 : 2014.03.01)
- 5) 기타 3인의 심사결과가 각기 다른 경우 구체적인 게재여부 판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 2005.10.8) (개정 : 2007.2.20) (개정 : 2009.11.13)

6.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 1) 투고자는 투고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표 1> 심사위원 3인의 평가가 각기 다른 경우의 게재여부 판정기준표
(개정 : 2007.2.20) (개정 : 2009.11.13)

제 1 심사위원	제 2 심사위원	제 3 심사위원	최종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청소년시설환경 설계작품 평가규정

·제 정 : 2002년 11월22일
 ·1차 개정 : 2003년 9월16일
 ·2차 개정 : 2005년 10월 8일
 ('학회지'를 '논문집'으로 용어개칭 : 2005.10.8)
 ·3차 개정 : 2007년 2월20일

1. 목적

본 평가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된 설계작품에 대한 작품의 공정한 평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품의 평가규정

설계작품은 작품의 내용과 표현, 완성도 및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요건은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와 같다.

3. 투고대상작품

본 논문집에 투고하는 설계작품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 2003.9.16) (개정 : 2007.2.20)

4. 심사

투고한 모든 설계작품은 원칙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시공여부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기관과 수상작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상기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혹은 기타의 단체로 한다.
- 2) 수상작품 : 수상작품은 수상기관이 시행한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설계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질의 우수성, 작품의 우수성, 수상의 경쟁성, 심사의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여한 수상작품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 수상작품의 범위 : 수상작품은 다음의 각 호에 한한다.
 - ① 특상, 당선작, 우수작,佳作 혹은 대상, 1등, 2등, 3등 혹은 금상, 은상, 동상의 작품
 - ② 수상작품이 1점만 선정되었을 경우는 상기 ①항의 수상작품 범위에 속하는 작품

5. 수상작품 투고자의 의무 (개정 : 2003.9.16)

각종 설계작품의 현상공모 및 작품평가에서 수상한 작품을 투고한 사람은 수상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별표 2> 설계작품 평가기준표
(개정 : 2003.9.16)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건
주 제	타 당 성	·적합성 :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주제를 담은 작품(필수요건) ·시의성 : 시급한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제안을 담고 있는 작품
	가 치 성	·참신성 : 주제가 참신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작품 ·독창성 : 독창적인 설계개념을 담고 있는 작품
내 용	설계과정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설계과정의 합리성
	유 용 성	·설계내용과 활동프로그램의 기능적 유용성
	공 익 성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형성과 양식
	친환경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심미성
완성도	표 현 력	·표현의 독창성과 내용의 명료성 ·작품 목적과의 부합성 및 표현의 설득력 ·공인된 표현기법의 채택(제도의 총칙 등) ·표현의 아름다움과 의미전달의 가독성
	기 술 적 가 능 성	·설계 후 시공이 완료된 작품(혹은 구조와 재료,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공 이 가능한 작품)
기 여 도		·청소년시설의 연구 및 분야발전에 기여도

청소년시설환경 논문 작성규정

·제 정 : 2005년 10월 08일
 ·1차 개정 : 2007년 02월 20일
 (전문재구성 : 2007년 02월 20일)
 ·2차 개정 : 2008년 09월 20일
 ·3차 개정 : 2011년 03월 31일
 ·4차 개정 : 2013년 08월 31일

1. 원고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표준으로 한다.

- 논문제목
- 저자
- 영문초록
- 본문
- 참고문헌

2.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제목(국문, 영문)

- ① 국문제목은 맨 윗줄 중앙에 넣는다.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문 주제목의 하단 중앙에 넣는다)
- ② 영문제목은 국문제목 하단 중앙에 넣는다. (부제목이 있는 경우, 영문 주제목의 하단 중앙에 넣는다)
- ③ 본 투고지침이외의 사항은 본 학회에서 제시한 견본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저자(국문, 영문)

- ① 국문성명은 영문제목 다음 2행을 띄우고 우측에 넣는다.
- ② 영문성명은 국문성명 하단에 다음 예와 같이 넣는다.

예) 홍길동

Hong, Kil-Dong

-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맨 뒤에 표기한다.

투고자 3인까지는 각 한 줄씩 병기한다. 그 이상인 경우 3인씩 줄을 바꿔 병기하되 4인인 경우만 2인씩 두 줄로 병기한다. (개정 : 2008.9.20)

예) 홍길동 Hong, Kil-Dong / 김길동 Kim, Kil-Dong

- ④ 소속 각주 표기는 성명 끝자 우측에 윗첨자 '*' 표시로 한다.

소속은 첫 쪽 왼쪽 하단에 각주 형태로 아래의 예와 같이 기입한다.

예) * ○○대 건축학과 교수

** ○○대 건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일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소속 다음에 기입한다.

예) * ○○대 건축학과 교수 (교신저자: 전자우편주소)

- ⑤ 연구비 지원 등 논문에 대한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저자의 소속 하단에 설명을 덧붙인다.

3) 영문초록

영문초록은 성명(국문, 영문) 다음 2행을 띄우고 12줄 내외로 기입한다.

주요어(Keyword)는 영문초록 하단에 5단어 내외로 기입하며, 국문(주요어)의 다음 행에 영문(Keyword)을 표기한다.

예) 주요어: 청소년, 청소년시설...
 Keyword: youth, youth facility...

4) 본문

① 본문의 각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들여쓰기 및 내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장 : I
 절 : 1.
 항 : 1.1
 이하 : 1) -> (1) -> ①

② 본문구성은 장 제목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띄우고, 절 제목은 위만 1행을 띄고, 항 타이틀은 행을 띄우지 않는다.

③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국문표기와 함께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1단 또는 2단의 가로 폭에 맞도록 편집한다.

- 표와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캡션)은 표와 그림의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

예) <표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빈도

- 문장 중에 들어가는 표와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문장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괄호없이 사용하고 문장과 연결 되지 않는 경우에는 < >괄호를 사용한다.

예) 표 1과 그림 2는 청소년시설의 발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시설의 발전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참조>

- 표와 그림의 주기는 표와 그림의 하단 좌측에 기재한다.

-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 좌측에 인용문헌 표기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표의 모양은 가장 윗선과 아랫선은 0.3mm 나머지 선은 0.12mm, 표의 왼쪽과 오른쪽 선은 없앤다.

- 그림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여러 그림이 하나의 제목으로 묶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등의 기호를 넣고 소제목을 붙인다.

- 사진은 그림으로 표기한다.

⑤ 주

-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자 우측 상부에 주의 일련번호를 반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 쪽 하부에 그 주의 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

예)청소년수련시설중 최초의 예²¹⁾는.....

- 논문의 장, 절 항을 포함한 제목에는 주를 달 수 없다. 이 경우, 본문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처음 기술할 때 주를 달아 설명한다.

5) 본문내용은 맑은고딕체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글자의 크기는 편집세부사항을 따른다.

3. 인용 문헌의 표기 방법

1)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는 해당 문장의 바로 뒤 괄호 안에 출전을 명기한다. 단 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문구의 앞뒤에 " " 표기를 추가한다. 출전은 기본적으로 저자와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하되 문헌의 저자와 출판연도, 페이지 사이에 각각 쉼표(,)와 콜론(:)을 사용한다. 또한 영문이름은 성만 표기한다. 세부 표기형식은 다음과 같다.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판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4)은..., 이몽룡(2004)은...

3)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문장의 끝에 괄호와 함께 저자명, 출판연도를 표시하며, 다수인 경우 인용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예) 인용문헌이 1개인 경우: ... 해당된다(홍길동, 2004)

인용문헌이 2개이상인 경우: ... 해당된다(홍길동, 2004; 이몽룡, 2001)

4) 저자가 다수인 경우

① 저자가 2인인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될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며, 두 번째부터는 첫 저자만 나타낸다.

예) 국내저자인 경우

첫 번째 인용 시: 홍길동, 이몽룡, 이도령(2006)은...

두 번째 인용 시: 홍길동 외(2006)는...

국외저자인 경우

첫 번째 인용 시: Greenberger, Steinberg, and Vaux(1981)

두 번째 인용 시: Greenberger et al.(1981)

5) 규정에 없거나 세부사항은 일반 예에 따르되 인용문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4. 참고문헌의 작성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동양문헌, 구미문헌, 인터넷 사이트의 순서로 작성하며, 국내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구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국내문헌의 경우, 성과 이름을 적고 이어서 ()안에 출판연도를 적는다.

외국문헌의 경우, 연구자의 성을 적고 심표를 한 다음 이름은 약자만 대문자로 적고 마침표를 한 다음 한 칸 띄우고 ()안에 출판연도를 적는다.

3) 국내문헌에서 하나의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줄부터는 한글 두 자리를 띄고 셋째 자리부터 시작한다.

외국문헌에서는 하나의 참고문헌이 두 줄 이상인 경우, 둘째 줄부터는 알파벳 네 자를 띄고 다섯째 자리부터 시작한다.

4) 실 예

① 단행본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② 학회지 게재논문

정성훈, 신유진 (2006). 장수천을 활용한 인천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계획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4(3), 3-14.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③ 보고서

김기태 (200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연구: 인터넷 미디어 교육시안 제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④ 학위논문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ik, J. S. (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⑤ 학술대회 발표논문

신미선 (2006). 청소년과 문화콘텐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0-53.

⑥ 번역서

Muuss, R. E. (1999). 청소년학. 권율(역). 서울: 보문당. (원본발간일, 1968).

⑦ 인터넷 자료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5. 편집세부사항

용지설정	용지방향	제책	여백주기 (mm)						제본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A4 [210 × 297 mm]	좁게	한쪽	20	15	20	20	8	15	0

2) 단수(본문)

자주 쓰이는 모양	단 종류	단 개수	단구분선	너비 및 간격		단방향	단 너비 동일하게	적용범위
				너비	간격			
둘	일반단	2	×	81 mm	8 mm	왼쪽부터	○	문서전체

3) 도입부분(제목, 성명, 영문초록, 주요어) 글상자

줄수	칸수	너비(W)	높이(H)	바깥여백				테두리	모든 셀의 안여백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1	1	170.0 mm	자동	0	0	5	5	선없음	0.50	0.50	0.50	0.50

4) 글자모양과 문단모양(개정 : 2013.8.31)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꼴	장평 (%)	자간 (%)	크기 (P)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	줄간격 (%)	문단 위	문단 아래	날말 간격	정렬방식
도입부분	국문제목	맑은고딕	100	0	16	0	0	0	150	0	0	0	가운데
	국문소제목	맑은고딕	100	0	12	0	0	0	150	0	0	0	가운데
	영문제목	맑은고딕	100	0	12	0	0	0	150	0	0	0	가운데
	영문소제목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가운데
	국문이름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오른쪽
	영문이름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오른쪽
	영문초록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본문	키워드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장 제목	맑은고딕	100	0	10	0	0	0	150	0	0	0	왼쪽
	절 제목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왼쪽
	항 제목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왼쪽
	본문	맑은고딕	100	0	9	0	0	10	150	0	0	0	혼합
	표, 그림제목	맑은고딕	100	0	8	0	0	0	150	0	0	0	가운데
	표, 그림내용	맑은고딕	100	0	8	0	0	0	150	0	0	0	혼합
	참고문헌타이틀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가운데
	참고문헌본문	맑은고딕	100	0	9	0	0	*	150	0	0	0	혼합
	수식	맑은고딕	100	0	9	0	0	0	150	0	0	0	혼합
각주	맑은고딕	100	0	9	0	0	**	130	0	0	0	혼합	

* :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18임

** : 각주는 내어쓰기 13임

청소년시설환경 편집규정

·제 정 : 2007년 2월20일

1. 목적

- 1) 이 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 1) 해당분야(청소년, 건축, 도시, 설계, 디자인, 조경 등) 박사학위 소지자
- 2) 해당분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3) 해당분야 10편 이상 논문 또는 작품 실적 소지자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 분야와 시설관련 분야에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 4) 선정된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 2) 심사위원단 구성
- 3) 심사위원 선정
-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5)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5. 편집회의의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2)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논문집 인쇄 10일 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6. 시행일시

- 1) 본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시설환경 윤리규정

·제 정 : 2007년 02월 20일
·1차 개정 : 2013년 08월 31일

1. 목적

본 규정은 '청소년시설환경'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 및 설계작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이사장,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3. 연구부정 행위

1)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2) 표절

- ① 표절은 기존 문헌을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견해나 표현, 연구결과 등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기존 문헌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 ③ 표절은 저자가 기존 문헌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동시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 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4) 중복 게재

-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②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재투고

- 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②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심의, 의결 절차

- 1) 학회 회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과반수 표결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 의결한다.

5. 비밀보장

-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벌칙

-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 나.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동시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나. 동시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7. 시행일시

- 1) 본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